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금융업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감

독원장”을 “다음 각 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2. 법 제16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3. 법 제60조에 따른 합병등의 인가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7조제2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

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를 “인가시”로 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금융위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 제목 “(보완서류 등의 제출)”을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 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등의”를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 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일 현재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2.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의15제8항의 제3호 중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를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또는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가” 로,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 를 “본질적 업무”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 를 “본질적 업무”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에서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19조의2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서 위탁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영 별표6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에게 이미 개설된 계좌의 입금·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12호”를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50조제1항” 및 “여신”을 “제2조제18호” 및 “신용공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4의3호” 및 “대출등”을 “제2조제6호” 및 “신용공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을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부터 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제24조의2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제8호 중 “금융감독원장” 을 “감독원장” 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수행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제24조의2제3항제11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8항(중전의 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제5항” 을 “영 제27조의2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

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1-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 또는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이 별표에서 “임원등”이라 한다)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영 별표6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자회사등에서 같은 표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없다.

가. 자회사등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영 별표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다른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영 별표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다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에서 영 별표6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에서 영 별표6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다른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등이 되는 경우

라. 자회사등인 생명보험회사의 임원등이 다른 자회사등인 손해보험

회사의 임원등이 되는 경우로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직하는 경우

별표1-4제2호 중 “임원” 을 “임원등” 으로 한다.

별표1-4제2호가목 중 “제18조의2제4호” 를 “제18조” 로 하며, “제18조의3” 을 “제18조의2” 로 한다.

별표1-4제2호다목 중 “제11조제1항제2호” 를 “제11조”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를 “제11조의2” 로 한다.

별표1-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임원등이 아닌 직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다만,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다. 영 별표6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별표1-4제4호나목 중 “위탁이 금지된 업무” 를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로, “위탁금지업무” 를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로 하고, “다만, 이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삭제한다.

별표1-4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직원이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제11호,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조의2(금융업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li> <li>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li> <li>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li> </ol>

제2조(인가절차의 구분) 다음 각 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의 절차는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와 인가로 구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의 인가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3조(예비인가의 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

<삭 제>

<삭 제>

<삭 제>

청)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

<삭 제>

①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신청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

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감안하여 예비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금융위는 예비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금융위는 구조조정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예비인가 신청시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가의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7조(인가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

1.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  
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인가)

<신 설>

<신 설>

사의 설립인가

2. 법 제16조에 따른 자회사등  
의 편입승인

3. 법 제60조에 따른 합병등의  
인가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② -----제18조에 따른-----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가)

①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  
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  
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  
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③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① (생략)

② (생략)

④ (생략)

⑤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현행 제1항과 같음)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인가시 -----  
-----  
-----  
-----  
-----.

⑨ 금융위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

제9조(보완서류 등의 제출)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①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 등의-----  
-----.

② 영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일 현재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2.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에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5.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로서 결

-----  
-----  
-- 본질적 업무-----

4. -----  
-----  
- 본질적 업무-----

-----  
-----  
본질적 업무-----

5.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에서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직의 형태가 6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파견인 경우

⑨ ~ ⑩ (생략)

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 위탁) ①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

2.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중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 산출

② ~ ⑥ (생략)

<신 설>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 위탁) ① -----

-----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



<p>1. ~ 3. (생략)</p> <p>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u>제2조제12호</u>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p> <p>5.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u>제50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한 <u>여신</u></p> <p>6.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u>제2조제4의3호</u>의 규정에 의한 <u>대출</u></p> <p>7. (생략)</p> <p>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생략)</p> <p>②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9. (생략)</p> <p>10. <u>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 금융기관 중 자회사등으로</u></p>	<p><u>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제2조제13호</u>----- -----</p> <p>5. ----- ----- -----<u>제2조제18호</u>----- - <u>신용공여</u></p> <p>6. ----- ----- <u>제2조제6호</u>----- <u>신용공여</u></p> <p>7. (현행과 같음)</p> <p>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u></p>
--	---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  
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  
여. 이 경우 신용공여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  
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  
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  
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  
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  
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  
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용공여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  
리)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  
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  
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 ② (생략)
-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10. (생략)
  -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에 따른 의

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수행
-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 11.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신 설>

⑥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 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영 제27조의2제6항 -----  
-----  
-----.

1. ~ 6. (현행과 같음)